

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 단서 중 “5퍼센트”를 “7퍼센트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 단서 중 “5퍼센트”를 “7퍼센트”로 한다.

제21조의2제1항 중 “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(이하 “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”이라 한다) 정원은 별표 4 제2호, 별표 10 제2호, 별표 10의2 제2호, 별표 11 제2호 및 별표 11의2 제2호와 같다”를 “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 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정보화담당관·심사2과장·제대군인일자리과장 및 국립4·19민주묘지관리소장”을 “정보화담당관·제대군인일자리과장·국립4·19민주묘지관리소장 및 국립5·18민주묘지관리소장”으로 한다.

별표 4 “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64”를 삭제하고, 일반직 계 “64”를 “65”로 하며, 행정서기보·공업서기보·임업서기보·시설서기보·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“6”을 “7”로 하고, “2. 시

간선택제채용공무원 1.0”를 삭제하며, “일반직 계 1.0”를 삭제하고, “행정서기보·공업서기보·임업서기보·시설서기보·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.0”를 삭제한다.

별표 10 “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869”를 삭제하고, 일반직 계 “869”를 “879”로 하며, 행정서기·공업서기·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“211”을 “212”로 하고, 행정서기보·공업서기보·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“226”을 “235”로 하며, “2.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0.0”를 삭제하고, “일반직 계 10.0”를 삭제하며, “행정서기·공업서기·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.0”를 삭제하고, “행정서기보·공업서기보·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9.0”를 삭제한다.

별표 10의2 “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873”을 삭제하고, 일반직 계 “873”을 “883”으로 하며, 행정서기·공업서기·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“223”을 “224”로 하고, 행정서기보·공업서기보·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“210”을 “219”로 하며, “2.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0.0”를 삭제하고, “일반직 계 10.0”를 삭제하며, “행정서기·공업서기·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.0”를 삭제하고, “행정서기보·공업서기보·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9.0”를 삭제한다.

별표 11 “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52”를 삭제하고, 일반직 계 “52”를 “53”으로 하며, 행정주사보 “19”를 “20”으로 하고, “2.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.0”를 삭제하며, “일반직 계 1.0”를 삭제하고, “행정주사보 1.0”를 삭제한다.

별표 11의2 “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54”를 삭제하고, 일반직 계 “54”를 “55”로 하며, 행정주사보 “19”를 “20”으로 하고, “2.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.0”를 삭제하며, “일반직 계 1.0”를 삭제하고, “행정주사보 1.0”를 삭제한다.

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총리령 제1449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“2021년 2월 28일”을 “2023년 2월 28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방형 직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칙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.

[별표 13]

국가보훈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(제23조 관련)

조직	정원	평가기간
보훈예우국 공훈발굴과	7명 (4급 1명, 5급 2명, 6급 3명, 7급 1명)	2021년 7월 26일까지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 및 별표 11의2와 같으며, 별표 10의2의 정원 중 4명(행정서기보 4명)과 별표 11의2의 정원 중 2명(행정서기 2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 ②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21조의2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4조제3항 및 「공무원임용령」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<u>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</u>(이하 “<u>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</u>”이라 한다) 정원은 별표 4 제2호, 별표 10 제2호, 별표 10의2 제2호, 별표 11 제2호 및 별표 11의2 제2호와 같다.	② (현행과 같음) 제21조의2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.	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.
제22조(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)	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 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. 제22조(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)
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을,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4조제5항에 따라 <u>정보화담당관·심사2과장·제대군인일자리과장 및 국립4·19민주묘지관리소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</u>	② ----- ----- ----- --- <u>정보화담당관·제대군인일자리과장·국립4·19민주묘지관리소장 및 국립5·18민주묘지관리소장</u> -----.
총리령 제1449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	총리령 제1449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)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1의2의 행정서기 1명은 <u>2021년 2월 28일</u> 까지 존속한다.	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) ----- ----- ----- <u>2023년 2월 28일</u> -----.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4]
국립대전현충원 공무원 정원표(제21조제1항 본문 및 제21조의2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 <u>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</u>	· <u>64</u>	· <u><삭 제></u>	-64
일반직 계	<u>64</u>	<u>65</u>	+1
· · 행정서기보·공업서기보 ·임업서기보·시설서기보·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	· · <u>6</u>	· · <u>7</u>	+1
· · <u>2.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</u>	· · <u>1.0</u>	· · <u><삭 제></u>	-1.0
일반직 계	<u>1.0</u>	<u><삭 제></u>	-1.0
<u>행정서기보·공업서기보·임업서기보·시설서기보·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</u>	<u>1.0</u>	<u><삭 제></u>	-1.0

[별표 10]
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공무원 정원표(제21조제1항 본문 및 제21조의2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<u>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</u>	<u>869</u>	<u><삭 제></u>	-869
일반직 계	<u>869</u>	<u>879</u>	+10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·공업서기·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	<u>211</u>	<u>212</u>	+1
행정서기보·공업서기보·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	<u>226</u>	<u>235</u>	+9
·	·	·	
·	·	·	
<u>2.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</u>	<u>10.0</u>	<u><삭 제></u>	-10.0
일반직 계	<u>10.0</u>	<u><삭 제></u>	-10.0
행정서기·공업서기·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	<u>1.0</u>	<u><삭 제></u>	-1.0
행정서기보·공업서기보·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	<u>9.0</u>	<u><삭 제></u>	-9.0

[별표 10의2]
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공무원 정원표(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1조의2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<u>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</u>	<u>873</u>	<u><삭 제></u>	-873
일반직 계	<u>873</u>	<u>883</u>	+10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·공업서기·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	<u>223</u>	<u>224</u>	+1
행정서기보·공업서기보·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	<u>210</u>	<u>219</u>	+9
·	·	·	
·	·	·	
<u>2.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</u>	<u>10.0</u>	<u><삭 제></u>	-10.0
일반직 계	<u>10.0</u>	<u><삭 제></u>	-10.0
행정서기·공업서기·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	<u>1.0</u>	<u><삭 제></u>	-1.0
행정서기보·공업서기보·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	<u>9.0</u>	<u><삭 제></u>	-9.0

[별표 11]

보훈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21조제1항 본문 및 제21조의2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<u>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</u>	<u>52</u>	<u><삭 제></u>	-52
일반직 계	<u>52</u>	<u>53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보	<u>19</u>	<u>20</u>	+1
·	·	·	
·	·	·	
<u>2.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</u>	<u>1.0</u>	<u><삭 제></u>	-1.0
일반직 계	<u>1.0</u>	<u><삭 제></u>	-1.0
행정주사보	<u>1.0</u>	<u><삭 제></u>	-1.0

[별표 11의2]

보훈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1조의2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<u>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</u>	<u>54</u>	<u><삭 제></u>	-54
일반직 계	<u>54</u>	<u>55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보	<u>19</u>	<u>20</u>	+1
·	·	·	
·	·	·	
<u>2.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</u>	<u>1.0</u>	<u><삭 제></u>	-1.0
일반직 계	<u>1.0</u>	<u><삭 제></u>	-1.0
행정주사보	<u>1.0</u>	<u><삭 제></u>	-1.0